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62
----------	------

202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5.10.20
-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25.10.23
- 상정일자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5.12. 5.)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5.12.15)
 -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1. 제안이유

-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조항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원이 3년 간 연장됨에 따라 813억 원의 세입이 증대된 반면,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1,727억 원 감액되는 등 세출보다 세입이 906억 원 줄어들게 되어 2차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편성 규모

-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7,992억원 대비 1,409억원 증가한 11조 9,401억 원임

나. 세입예산

- 일반 예산은 증액하지 않았고 감액만 906억 원이 실시하였으며, 목적이 지정된 재원 2,315억 원만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9억 원이 늘어남

다. 세출예산

- 세출 총액은 총 11조 9,401억 원으로, 일반재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 등 906억원을 감액하였음
 -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인원 감소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3개 사업에서 281억원을 감액하였고
 - 교육사업비에서는 디지털 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디지털 교과서 예산 등 12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시설사업비에서는 사업취소, 사업시기 변경 등에 따라 학교 신증설 등 3개 사업에서 445억원을 감액하였고
 - 재무활동에서는 자금 부족 상황에 대비해 일시 차입 이자 비용으로 5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차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액 감액하였음
 -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차 추경 때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 중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부유보금 등 49억원을 감액함
 - 목적재원은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누리과정 지원예산 151억원 을 감액함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엄지운)

I.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25년 10월 2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조 7,992억 5,200만원 보다 1.2%, 1,408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조 9,401억 1,900만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현황		재원구분	
		증감액(A-B)	증감률	일반재원	목적지정재원
11,940,119	11,799,252	140,867	1.2	△90,622	231,489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 차이 있음

○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906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목적지정재원 2,314억 8,9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1,408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내역		원 구 분		
			증감액 (C=A-B)	증감률 (C / B)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계	11,940,119	11,799,252	140,867	1.2	△90,622	246,621	△15,132
이전수입	11,514,022	11,373,949	140,073	1.2	△91,415	246,621	△15,132
중앙정부이전수입	6,885,344	6,911,704	△26,360	△0.4	△95,054	83,826	△15,132
자치단체이전수입	4,610,273	4,443,903	166,370	3.7	3,639	162,731	-
기타이전수입	18,406	18,342	64	0.3	-	64	-
자체수입	124,998	124,505	493	0.4	493	-	-
기타	301,098	300,798	300	0.1	300	-	-
전년도이월금	297,167	297,167	-	-	-	-	-
금융자산회수	3,931	3,631	300	8.3	300	-	-
내부거래	-	-	-	-	-	-	-
기금전입금	-	-	-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 **일반재원**의 경우,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triangle 1,726$ 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교부금 776억 2,6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이며,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6억 3,900만원, ③ 기타 금융자산회수 3억원, ④ 자체수입은 4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일반재원은 기정예산보다 총 $\triangle 906$ 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으로,
 - 관련 법령 및 예산총칙에 따라 우선확정한 2,466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 교육부의 예산 조정 결과 알림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액중 감액 조정분 $\triangle 151$ 억 3,200만원을 경정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1,408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2-3〉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감액(C=A-B)	증감률(C/B)	일자	반월	목적지정
합계		11,940,119	100	11,799,252	100	140,867	1.2	△90,622	246,621	△15,132
인건비	계	7,279,438	61.0	7,307,573	61.9	△28,135	△0.4	△28,135	-	-
	공무원인건비	4,670,587	39.1	4,678,182	39.6	△7,595	△0.2	△7,595	-	-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	1,265,232	10.6	1,283,207	10.9	△17,974	△1.4	△17,974	-	-
	사립학교인건비	1,343,618	11.3	1,346,184	11.4	△2,566	△0.2	△2,566	-	-
경상비	계	1,010,865	8.5	1,010,865	8.6	-	-	-	-	-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40,632	0.3	40,632	0.3	-	-	-	-	-
	학교운영비	970,233	8.2	970,233	8.2	-	-	-	-	-
	학교운영비	722,609	6.1	722,609	6.1	-	-	-	-	-
사업비	사업비	247,624	2.1	247,624	2.1	-	-	-	-	-
	계	3,587,491	30.0	3,413,220	28.9	174,271	5.1	△57,028	246,431	△15,132
	교육사업비	2,701,427	22.6	2,529,212	21.4	172,215	6.8	△12,485	199,832	△15,132
	시설사업비	886,064	7.4	884,008	7.5	2,056	0.2	△44,543	46,599	-
	시설사업비	67,543	0.6	73,746	0.6	△6,203	△8.4	△6,203	-	-
재무활동	일반시설	751,328	6.3	741,261	6.3	10,067	1.4	△36,346	46,413	-
	급식시설	67,193	0.5	69,001	0.6	△1,808	△2.6	△1,994	186	-
	계	10,741	0.1	11,126	0.1	△385	△3.5	△575	190	-
	지방채상환등	-	-	575	0.0	△575	△100	△575	-	-
예비비 및 기타	B T L 상환	2,941	0.0	2,751	0.0	190	6.9	-	190	-
	기금전출금	7,800	0.1	7,800	0.1	-	-	-	-	-
	예비비 및 기타	51,584	0.4	56,468	0.5	△4,884	△8.6	△4,884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 **인건비**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 총 △281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하였으며,
- **교육사업비**는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총 1,998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나,
 - 관련 법령에 따라 기 편성된 AI디지털교과서(△68억 8,400만원) 등을 포함한 감액분 △276억 1,700만원을 합하여 총 1,722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시설사업비**는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환경개선을 포함한 일반시설 100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나,
 - 학교신증설,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등 급식시설 △80억 1,100만원의 감액분을 합한 총 20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재무활동**은 일시차입금 이자비용 △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BTL상환금 1억 9,000만원은 증액하여 총 △3억 8,5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이며,
- **예비비및기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 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유보금 △42억 4,800만원 감액분과, 반환금 편성액 △6억 3,500만원의 감액분을 포함 한 총 △48억 8,4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2. 추경예산안의 특징과 편성의 적절성

- 관련 법령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난 10월 20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10개 사업, 세출 58개 사업(일반재원 감액 34건, 목적지정재원 증·감액 75건)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표 2-4〉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원 및 목적지원내역 증·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재 원 구 분 (조정 건수)	
	일 반 재 원	목 적 지 정 재 원
증 액	- (0)	246,621 (73)
감 액	△90,622 (34)	△15,132 (2)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①정부의 세수 결손분 감액에 따라 보통교부금 △1,726억원을 감액하고, ②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 조항이 연장되어 증액교부금 776억원을 이입하고, ③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목적지정재원 2,315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 ③외부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예산총칙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통해 확정 처리하고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제2회 추경안은 보통교부금과 증액교부금 세입 증·감조정, 일부 목적지정재원의 감조정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되는 추경안의 취지와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을 고려하면,

- ①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인 정부 세수 결손 감액분과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조항 연장에 따른 증액분 등에 의한 일반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②‘일반재원과 목적지정재원의 감조정’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의 불용액 발생 규모를 감소시키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기 보다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에 대한 조기판단과 적극적인 감액을 통해 하반기중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보다 조기에 추경안이 편성·제출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의 수정교부(감액) 통지가 '25년 7월에 시행되었고, 증액교부금의 하반기분 교부(증액) 통지도 '25년 9월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회의 상정 및 의결되어 예산이 반영될 시기까지 고려하면, 결국 수개월 동안 예산을 조정하여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 서울특별시의 경우, '25년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민생회복 쿠폰 지원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증액과 더불어 기초연금 지급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감액 등을 병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5년 하반기중 소규모라도 집행가능한 일반재원 사업 예산의 증액 수요를 반영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실현 가능한 '보충성'과 회계연도중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어 향후 추경예산안의 편성·제출 시기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III.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됨

-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조정,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기간 연장으로 인한 하반기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6조 9,117억 400만원) 보다 △0.4%, △263억 6,000만원이 감액된 6조 8,853억 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재 원 구 분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재 원	우선확정
합 계	6,885,344	6,911,704	△26,360	△0.4	△95,054	83,826	△15,1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02,739	6,437,479	△34,740	△0.5	△95,054	60,314	-
보 통 교 부 금	6,068,601	6,241,282	△172,681	△2.8	△172,681	-	-
특 별 교 부 금	256,511	196,197	60,314	30.7	-	60,314	-
증 액 교 부 금	77,627	-	77,627	순증	77,627	-	-
국 고 보 조 금	40,507	34,354	6,153	17.9	-	6,153	-
특별회계전입금	442,098	439,871	2,227	0.5	-	17,359	△15,132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6조 2,412억 8,200만원) 보다 △2.8%, △1,726억 8,100만원 감액된 6조 686억 1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한 것임

〈표 3-2〉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6,068,601	6,241,282	△172,681	△2.8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 이는 '25년 7월,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통지에 따라 △1,726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 '23년 9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자금 감액 추계(안)과, '24년 11월,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통지에 이어 3개년도 연속 회계연도중 감액이 통지된 것으로, 향후 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보통교부금의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부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3〉 2025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시 도	2025년 본 예 산		2025년 제 2회 추경예산 (B)	본 예 산 액 대비 감 액 분 (C = A - B)	감 액률 (C / A * 100)
	확정교부액 (A)	비 율			
서 울	6,241,281	8.9	6,068,600	△172,681	△2.7
부 산	3,843,886	5.5	3,737,535	△106,351	△2.7
대 구	3,116,109	4.4	3,029,894	△86,215	△2.7
인 천	3,866,502	5.5	3,759,525	△106,976	△2.7
광 주	2,084,841	2.9	2,027,159	△57,682	△2.7
대 전	2,094,099	3.0	2,036,160	△57,938	△2.7
울 산	1,725,751	2.4	1,678,004	△47,747	△2.7
세 종	905,971	1.3	880,905	△25,066	△2.7
경 기	17,052,084	24.4	16,580,294	△471,790	△2.7
강 원	3,133,295	4.5	3,046,604	△86,690	△2.7
충 북	2,819,644	4.0	2,741,631	△78,012	△2.7
충 남	3,969,926	5.7	3,860,087	△109,838	△2.7
전 북	3,614,422	5.1	3,514,420	△100,002	△2.7
전 남	3,924,321	5.6	3,815,745	△108,576	△2.7
경 북	4,659,828	6.6	4,530,902	△128,926	△2.7
경 남	5,513,947	7.9	5,361,390	△152,557	△2.7
제 주	1,093,655	1.5	1,063,396	△30,258	△2.7
계	69,659,572	100.0	67,732,259	△1,927,313	△2.7

※ 자료근거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239 ('25. 7.18)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알림”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대책에 대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바,

〈표 3-4〉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56,512	196,197	60,314	30.7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교부금** 60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전액 관련 법령에 따른 우선확정분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교부금**의 편성 내역은 ①유보통합운영(111억 2,200만원) 등을 포함한 국가시책사업 24건, 총209억 3,300만원, ②학교시설환경개선의 기타사업(161억 6,400만원) 등을 포함한 지역교육현안 8건, 총198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 하였으며,

- ③AIDT적용교원연수지원(3억 9,000만원)을 포함한 디지털교육혁신 3건, 4억 7,700만원, ④학교시설환경개선의 내진보강(176억 8,300만원)을 포함한 재난안전관리 4건, 190억 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건에 대해 우선확정분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5〉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우 선 확 정 분	추 경 편 성 분
건 수	39	39	-
금 액	60,314	60,314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3) 증액교부금

- 증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표 3-6〉 증액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77,627	-	77,627	순증

- '24년도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증액교부금으로 서울시교육청에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24.12.31.)으로 '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하반기 국가부담분에 해당하는 776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안에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7〉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내역

(단위 : %, 백만원)

연 도	구 분	부 담 비 율	부 담 액
2025년 (하반기분)	교육청	47.5	76,818
	국 가	48.0	77,627
	지자체(서울시+자치구)	4.5	7,277
	합 계	100	161,72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9204 (25.10. 1) “2025년~20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액 알림”

- 고교무상교육 소요경비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법률 적용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상반기 교부분중 국가부담분과 자치단체부담분을 교육청이 부담한 바,
- 한시적 법령 적용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은 향후 교육청의 잠재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육부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중 기존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제되고,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항이 사실상 수정됨에 따라, 향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 비율이 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인 바,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국고보조금은 3건으로, 기정예산(343억 5,300만원) 보다 17.9%, 61억 5,200만원이 증액된 405억 600만원을 전액 우선확정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하는 것임

〈표 3-8〉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우선확정액 합계)	증감률
40,506	34,353	6,152	17.9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우선확정액	우선확정일
학교시설환경개선	그린스마트스쿨	3,997	9.23
시설사업운영	에코스쿨	2,000	8.29
각종체육활동	학교운동부및체육계학교지원	155	9.21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p.11

(5) 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예산에서 정하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바,

〈표 3-9〉 특별회계전입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442,097	439,870	2,226	0.5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 ① 173억 5,900만원을 증액 요청한 5세 무상교육·보육지원금은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되어, 교육부의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 따라 교부된 173억 5,900만원을 이입하는 것이며
- ② △ 151억 3,200만원을 감액 요청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교육부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조정 결과에 따라, △ 151억 3,2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①법정이전수입과 ②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요청액은 기정예산액 (4조 4,439억 300만원) 보다 3.7%, 1,66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법정이전수입은 36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②비법정이전수입은 1,627억 3,100만원을 증액하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표 3-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4,610,273	4,443,903	166,370	3.7	3,639	162,731	-
법 정 이 전 수 입	4,190,764	4,187,124	3,639	0.1	3,639	-	-
지방교육세전입금	1,902,908	1,902,908	-	-	-	-	-
담배소비세전입금	249,124	249,124	-	-	-	-	-
시도세전입금	1,909,662	1,909,662	-	-	-	-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778	3,778	-	-	-	-	-
지방교육자정교부금보전금	112,214	112,214	-	-	-	-	-
교육급여보조금	9,436	9,436	-	-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639	-	3,639	순증	3,639	-	-
비 법 정 이 전 수 입	419,509	256,778	162,731	63.3	-	162,731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48,556	152,157	96,399	63.3	-	96,399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70,910	104,578	66,332	63.4	-	66,332	-
지방양성평등지원사업보조금	44	44	-	-	-	-	-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4조 1,871억 2,400만원) 보다 0.1%, 36억 3,900만원을 증액한 4조 1,907억 6,4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관련 법령 신설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36억 3,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의 경우에는, '25년도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부담금(36억 3,900만원)과, '26년도 전체 부담금(67억 3,400만원)을 합한 103억 7,300만원을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기정예산(2,567억 7,800만원) 보다 1,627억 3,100만원 증액된 4,195억 900만원을 편성요청 한 것이나, 전액 우선확정분을 편성 요청 한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1,521억 5,600만 원) 보다 963억 9,900만원을 증액한 2,485억 5,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무상급식(945억 4,600만원),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생안전관리 등 특별교육경비보조금(15억 8,700만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급식비(2억 6,400만원)를 포함한 9건, 963억 9,9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자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기정예산(1,045억 7,800만원) 보다 663억 3,100만원 증액한 1,709억 9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으로,
 - 무상급식(637억 3,900만원), 학교시설확충(15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7억원), BTL원금·이자(1억 9,000만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급식비 (1억 7,6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2,500만원)을 포함한 14건, 663억 3,1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고자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184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183억 4,200만원) 보다 0.3%, 6,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3-11〉 기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 = A - B)	증감률 (C / B)
합 계	18,406	18,342	64	0.3
민간이전수입	14,497	14,447	50	0.3
기타지원금	7,992	7,942	50	0.6
기타협력사업비	6,504	6,504	-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908	3,894	14	0.4
전입금	3,908	3,894	14	0.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144억 4,700만원) 보다 기타지원금 5,000만원이 증액된 144억 9,7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주최하는 “2025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확산 통합 공모”사업에 강남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이 공모 신청하여 교부된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지방공무원 6급 하반기 미래인재양성과정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탁 교육생 2명에 대한 지방공무원연수운영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제출됨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1,245억 500만원) 보다 0.4%, 4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49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3-12〉 자체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 = A - B)	증감률 (C / B)
합계	124,998	124,505	493	0.4
교수학습활동수입	1,579	1,579	-	-
행정활동수입	5,931	5,931	-	-
자산수입	17,558	17,553	5	0.1
이자수입	19,915	19,915	-	-
기타수입	80,015	79,527	488	0.6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 **자산수입**은 교육시설관리본부의 불용차량 매각에 따른 수납액 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이며,
- **기타수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계부가금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에 대한 민원감사 및 사안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기 위해 기정예산보다 4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5. 기타

- **기타**는 기정예산(3,007억 9,800만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3,010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3〉 기타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액 (A)	기 정 예 산 액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합 계	301,098	300,798	300	0.1
전 년 도 이 월 금	297,167	297,167	-	-
금 용 자 산 회 수	3,931	3,631	300	8.3
용 자 금 원 금 회 수	3,631	3,631	-	-
보 증 금 회 수	300	-	300	순증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 **금융자산회수**는 보증금회수 3억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서울상도유치원의 재개원에 따라 (구)동아유치원 건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반환받은 보증금 3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18년 9월,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이후 원아 수용을 위해 '19년 3월부터 3차에 걸쳐 (구)동아유치원 건물을 임차 계약한 바, '25년 8월, 서울상도유치원 공사가 완료되고 (구)동아유치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증금(3억원) 반환금을 징수하여 세입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목적지정재원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회계연도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재원은 2,314억 8,900만원으로, ①2,466억 2,100만원은 예산총칙에 따른 우선확정을 하였고, ②△151억 3,200만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경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4-1〉 목적지정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편 성 재 원	증 감 액
합 계		231,489
①우선확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 전입금	246,621
②추경편성	특별교부금, 기타지원금	△15,132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①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사업

- 목적지정재원으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사업은 73건, 2,466억 2,100만원으로 관련 법령 및 예산총칙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2〉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합	계		73		246,621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특 별 교 부 금		39		60,314
	국 고 보 조 금		3		6,153
	특 별 회 계 전 입 금		2		17,359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광 역 자 치 단 체 전 입 금		9		96,399
	기 초 자 치 단 체 전 입 금		14		66,332
기 타 이 전 수 입	기 타 지 원 금		5		50
	전 입 금		1		14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5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무상급식**은 교육청(50%) · 서울시(30%) · 자치구(20%)와 소요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①서울시 무상급식 지원금 945억 4,600만원과 ②자치구 무상급식 지원금 637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82억 8,6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내진보강(특별교부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25년 제6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학교회계전출금 총 176억 8,3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유보통합운영(특별교부금)**은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1:13을 초과하는 3세 학급(반)의 유치원·어린이집을 지원하고, '25년 유보통합 특색사업 로드맵 추진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기관 전체에 우선순위에 따른 교육돌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총 111억 2,1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집중호우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은 '25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학교 시설 등의 보수 및 피해 예방·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교 및 특수학교 1교 대상 지원금 총 10억 1,7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지원과 소관 **교육공간총괄기획(국고보조금)**은 환경부-서울시-교육부 협업을 통해 폐교(구 공진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가칭)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시설비 227억 3,200만원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A〉 주요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선확정액
광역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급 식 운 영	2025년 9~12월 친환경 학교급식비	86,735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급 식 운 영	2025년 9~12월 친환경 학교급식비	58,531
특 별 교 부 금 (재난안전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내 진 보 강	17,683
특 별 교 부 금 (지 역 현 안)	학교시설환경개선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6,164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누 리 과 정 지 원	5 세 무 상 교 육 비	11,523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유 아 교 육 운 영	유 보 통 합 2 차	11,121
광역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급 식 운 영	2025년 9~12월 친환경 유치원급식비	7,81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누 리 과 정 지 원	5 세 무 상 보 육 료	5,836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급 식 운 영	2025년 9~12월 친환경 유치원급식비	5,207
국 고 보 조 금	학교시설환경개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조 성	3,997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대학수학능력시험	진 학 지 원	3,224
국 고 보 조 금	시 설 사 업 운 영	에 코 스 쿨	2,000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시 설 확 충	서 연 중 복 합 화	1,500
광역자치단체 전 입 금	학교시설환경개선	서 울 시 특 별 교 육 경 비 보 조	1,378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직업교육환경개선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지원 2 차	1,200
특 별 교 부 금 (지 역 현 안)	학교시설환경개선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1,154

〈표 4-3B〉 주요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선확정액
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	학교시설환경개선	집 중 호 우 재 해 대 책 수 요	1,017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늘봄학교운영	특수 늘봄	940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확충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기타증축)	816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대상자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746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학교시설환경개선	화곡초복합화	700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도장공사)	555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학교시설환경개선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바닥개선)	534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학력평가관리	미래형 학생평가 · 학교생활기록 체제 구축 운영	508

※ 우선확정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② 목적지정재원 추가경정예산편성

○ 목적지정재원중 우선확정을 통한 증액 편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을 함께 요청한 사업은 **유아보육료, 유아학비** 2건인 바,

- 교육부의 “2025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조정 결과 알림”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액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액 조정분(△ 151억 3,200만원)과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 계획」에 따른 우선확정 증액분(173억 5,900만원)을 함께 반영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 유아보육료, 유아학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목 적 지 정	최종예산	
우선확정	추경편성					
유아보육료 합계	243,986	△8,915	235,071	5,836	△14,749	250,019
3 세 보 육 료	91,297	△5,154	86,142	-	△5,154	94,163
4 세 보 육 료	77,501	△4,786	72,714	-	△4,786	75,454
5 세 보 육 료	75,187	1,026	76,214	5,836	△4,809	80,401
유아학비 합계	239,988	11,142	251,130	11,522	△382	224,145
3 세 유 아 학 비	62,248	-	62,248	-	-	57,361
4 세 유 아 학 비	86,205	-	86,205	-	-	74,841
5 세 유 아 학 비	91,533	11,142	102,676	11,522	△382	91,942
합 계				17,359	△15,13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아보육료) 감액 조정으로 인해, **유아보육료**의 경우, 3세보육료 $\triangle 51억 5,400만원$, 4세보육료 $\triangle 47억 8,600만원$, 5세보육료 $\triangle 48억 900만원$ 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것이며, **유아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 유아 수의 변경내용($\triangle 317명$ 감소) 등을 반영하여 5세유아학비 $\triangle 3억 8,100만원$ 을 감액요청한 것임
- 우선확정 증액요청분은 교육부의 「2025년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계획」에 따라 5세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13,896명의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58억 3,6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5세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 5,391명과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 16,479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5억 2,2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임

〈표 4-5〉 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세부 편성내역

사업내역	추경소요예산	산출내역	
3세 보육료	$\triangle 5,154,709천원$	$\triangle 5,154,709,000원 \times 1식$	$= \triangle 5,154,709천원$
4세 보육료	$\triangle 4,786,950천원$	$\triangle 4,786,950,000원 \times 1식$	$= \triangle 4,786,950천원$
5세 보육료	1,026,600천원	$\triangle 4,809,720,000원 \times 1식$	$= \triangle 4,809,720천원$
		$70,000원 \times 13,896명 \times 6월$	$= 5,836,320천원$
5세 유아학비	11,142,056천원	$\triangle 381,004,000원 \times 1식$	$= \triangle 381,004천원$
		$20,000원 \times 5,391명 \times 6월$	$= 646,920천원$
		$110,000원 \times 16,479명 \times 6월$	$= 10,876,140천원$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145~146

2. 세출예산 감액 관련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사업별 설명자료, p.226)

- 학교지원과 소관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은 기정예산(41억 9,200만원) 대비 △11.9%, △5억원을 감액한 36억 9,2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것임

〈표 4-6〉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계	4,192	△500	3,692	2,945
통폐합학교지원	4,021	△500	3,521	2,738
통합운영학교지원	170	-	170	207

- 통폐합학교지원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2026학년도 중 총 7교 대상 남녀공학 전환 지원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6학년도에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된 2개교 (잠실고, 장충중)를 대상으로 '25년 하반기 중 남녀공학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한 다른 학교 내 설문조사 및 기관 의견 조사 결과, 추가 신청한 학교가 없어 금번 추경안에 미신청 5개교에 해당하는 불용 예정액 △5억원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25년 4월 수립된 세부계획을 검토하면, 남녀공학 전환학교 지원금은 '26년 상반기중 전환 신청을 받아 '26년도중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계연도”라는 기한이 있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남녀공학 전환 희망학교, 교육지원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신설** (사업별 설명자료, p.232)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설**은 기정예산(615억 1,600만원) 대비 △9.3%, △57억 1,500만원을 감액한 558억 100만원으로 경정요청 한 것으로,

〈표 4-7〉 학교신설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계	61,516	△5,715	55,801	44,058
공립유	3,385	-	3,385	7,025
공립초	25,528	-	25,528	26,638
공립중	1,267	-	1,267	864
공립고	13,400	-	13,400	-
공립특수	9,708	△5,715	3,993	9,530
공립각종	8,227	-	8,227	-

- 공립특수의 경우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①(가칭)동진학교의 1차 공사 예정 공정률과 2차 공사 소요액을 고려하여 25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지장물 철거, 이전 협의 등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토지보상비(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도 예정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57억 1,5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중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의결하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②(가칭)성진학교에 대한 설계비를 편성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촉구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모포털을 통해 (가칭)성진학교에 대한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26년 본예산에 (가칭)성진학교 설계공모보상금과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교과용도서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99)

○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교과용도서지원**은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지원 및 인정 도서 개발·보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1,056억 1,900만원)중 AI 디지털교과서 △68억 8,400만원이 감액요청된 987억 3,4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임

〈표 4-8〉 교과용도서지원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 (A + B)	최종예산
합계	105,619	△6,884	98,734	62,742
A 1 디 지 털 교 과 서	14,884	△6,884	7,999	-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과서	3	-	3	2
인정도서관리	155	-	155	145
초, 중학교교과도서	89,777	-	89,777	61,828
초, 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	483	-	483	510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교과서	315	-	315	256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99

- AI디지털교과서는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자율선정 지침에 따라 사용희망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부고시에 따른 검정 AI디지털교과서 확정 단가를 적용하여 당초 편성된 본 예산(256억 2,900만원)에서 △107억 4,500만원을 감액한 148억 8,400만원)으로 경정한 바 있으나,

- '25년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AIDT(AI Digital Textbook, 디지털교과서)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원인행위된 2025학년도 상반기 AIDT(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보급계약 완료분을 제외하고, 하반기 집행예정액(△68억 8,4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를 통해 '25학년도 2학기중에 AIDT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지원' 예산 19억 1,400만원을 'ICT활용교육지원' 예산으로 이용 승인 요청하여 우리 의회가 승인한 바 있어 AIDT가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됨

〈표 4-9〉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이 용 증 감	비 고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교 육 복 지	교 육 복 지 지 원	교 과 서 지 원	운 영 비 (2 1 0)	△1,914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학 교 정 보 화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학 교 회 계 전 출 금 (6 2 0)	1,914	(공립) 1,549 (사립) 36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①의안번호 : 3121, ②제안(교육감) : '25. 8.25, ③회부 : '25. 8.26

④심사 : '25. 9. 9, ⑤본회의 상정 및 의결 : '25. 9.12

□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61)

- 예산담당관 소관 **공무원인건비**는 기정예산(4조 6,781억 8,200만원) 대비 △0.2%, △75억 9,500만원을 감액한 4조 6,705억 8,7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것으로,
 -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인원(807명)과 초·중등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인원(5명)이 확정되어 명예퇴직수당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75억 9,5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표 4-10〉 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678,182	△7,595	4,670,587	4,628,067
보 수	3,507,810	-	3,507,810	3,449,842
법 정 부 담 금	1,006,118	-	1,006,118	989,052
명 예 퇴 직 수 당	92,150	△7,595	84,555	117,290
맞 춤 형 복 지 비	72,102	-	72,102	71,882

-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명예퇴직 인원을 총 874명으로 추계하여 52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나,

〈표 4-11〉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예퇴직수당 증액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명예퇴직수당	5,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인건비 5,200,000천원 - 초등명예퇴직수당 1,200,000천원×1식 = 1,200,000천원 - 중등명예퇴직수당 4,000,000천원×1식 = 4,000,000천원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p.624

- '25년 8월, 하반기 교원 807명과 교육전문직원 5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완료되어 불과 수개월 뒤 제출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5억 9,500만원의 불용예정액을 감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2〉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예퇴직수당 감액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소요예산	산출내역
명예퇴직수당	△7,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인건비 △7,150,000천원 - 초등명예퇴직수당 △3,700,000천원×1식 = △3,700,000천원 - 중등명예퇴직수당 △3,450,000천원×1식 = △3,450,000천원
	△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전문직원인건비 △445,000천원 - 초등명예퇴직수당 △150,000천원×1식 = △150,000천원 - 중등명예퇴직수당 △295,000천원×1식 = △295,000천원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245~246

-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다음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초자료를 조사하기위해 매년 7~8월중 다음해 상·하반기(2·8월) 퇴직 예정인원을 산출하고 있어, 수요조사 당시 퇴직을 희망하는 실제 시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철회하는 등 수요 반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교원 명예퇴직 수당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소요예산 전액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고 있어 수요예측에 대한 정밀도를 높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2년도부터 매년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의 이용을 통해 초·중등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조정한 바, 연중 실시되는 교육부 주관 명예퇴직 예정인원 수요조사 이외에 교육청 자체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거나, 퇴직인원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3〉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집행 현황(2022~202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E)	집행잔액 (F=D-E)
	본 예산 (A)	추경증감 (B)	이용증감 (C)	계 (D=A+B+C)		
2025년	82,200	△1,950	-	80,250	79,956 ^{주1)}	294 ^{주2)}
초등교원	45,200	1,200 <small>(1회 추경)</small>	- <small>(2회 추경)</small>	42,700	42,608 ^{주1)}	92 ^{주2)}
		△3,700 <small>(2회 추경)</small>				
중등교원	37,000	4,000 <small>(1회 추경)</small>	- <small>(2회 추경)</small>	37,550	37,348 ^{주1)}	202 ^{주2)}
		△3,450 <small>(2회 추경)</small>				
2024년	107,600	5,000	-	112,600	110,287	2,312
초등교원	53,800	5,000	-	58,800	60,515	△1,715
		-	-			
중등교원	53,800	-	-	53,800	49,772	4,027
		-	-			
2023년	107,600	-	-	107,600	106,100	1,499
초등교원	53,800	-	4,546	58,346	58,309	37
		-	△4,546			
중등교원	53,800	-	△4,546	49,254	47,791	1,462
		-	-			
2022년	97,200	△400	2,600	99,400	96,737	2,662
초등교원	46,200	2,600	2,600	51,400	48,781	2,618
		△3,000	-			
중등교원	51,000	-	-	48,000	47,956	44

※ 주1) 2025.10.21 기준 집행액

※ 주2) 2025.10.21 기준 집행액과 2회 추경 예산 반영액을 반영한 추정 잔액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2 ('25.10.27)

□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65)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기정예산(4,247억 9,900만원) 대비 △1.9%, △81억 5,400만원을 감액한 4,166억 4,500만원을 경정 요청한 것으로,

〈표 4-14〉 계약제교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24,799	△8,154	416,645	395,584
보 수	352,333	△7,336	344,997	327,935
기 타 직 법 정 부 담 금	37,709	△818	36,891	35,467
퇴 직 금 관 리	21,410	-	21,410	19,360
맞 춤 형 복 지 비	13,346	-	13,346	12,821

○ 보수 및 기타직법정부담금의 경우,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66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상 집행 인원(5,545명)이 △130명 추가로 감소하여 △81억 5,400만원을 추가 감액요청한 것임

〈표 4-15〉 계약제교원인건비 보수 및 기타직법정부담금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보 수	△7,336	○ 인건비 - 기간제교사 4,702,574원×△130명×12월 = △7,336,015천원	△7,336,015천원
기 타 직 법 정 부 담 금	△818	○ 학교회계전출금 - 대체교원(학교) △7,336,015,000원×11.1541% = △818,266천원	△818,266천원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248

- **계약제교원인건비**의 경우 ①정규교원의 휴직·파견 등에 따른 결원의 보충, ②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③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대체 시간강사 수당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전 예측에 한계가 있고,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편성되는 재원인 바,
- 세부적인 수요조사에 따른 정밀한 추계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불용예상액은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81)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기정예산(8,224억 9,000만원) 대비 △1.2%, △98억 2,000만원을 감액한 8,126억 6,9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것임

〈표 4-16〉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822,490	△9,820	812,669	721,168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806,484	△9,820	796,663	707,365
맞춤형복지비	16,006	-	16,006	13,802

○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4년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30개 직종의 기본급 및 수당인상액,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임금 인상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7,253억 8,500만원)보다 810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 관련 협약 등에 따라 '25년 6월중 무기계약직 방학중 비근무 직종 근무자 3,551명에 대해 직종통합 및 상시전환 등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2,338명을 전환 확정한 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불용이 예상되는 미전환한 근무자(1,213명)에 대한 인건비(\triangle 53억 7,600만원)와 법정부담금(\triangle 44억 4,400만원)을 합한 \triangle 98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7〉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편성내역

사업내역	추경소요예산	산출내역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5,376,01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5,376,016천원 - 기본급 △2,066,000원×1,213명×2월 = △5,012,116천원 - 급식비 △150,000원×1,213명×2월 = △363,900천원
	△4,444,443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전 △4,444,443천원 - 공무직원법정부담금 △4,444,443,000원×1식 = △4,444,443천원

※ 자료근거 :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3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131)

- 초등교육과 소관 **초등돌봄교실운영**은 오후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의 선택형 프로그램 수요가 감소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35억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표 4-18〉 초등돌봄교실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년도			2024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계	49,837	△3,500	46,337	39,484
초등돌봄교실 내실화지원	19	-	19	-
초등돌봄교실운영	49,818	△3,500	46,318	39,452
초등돌봄교실 담당자연수	-	-	-	32,390

- 서울시교육청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교육 또는 돌봄관련 늘봄 프로그램(늘봄과정)은 ①맞춤형프로그램과 ②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및 ③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 지난 '24년도에 신설된 늘봄학교 1~2학년 대상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운영 지원** 사업 내 맞춤형프로그램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선택형 프로그램은 수요가 감소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35억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아울러 '25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프로그램과 선택형프로그램(방과후학교, 돌봄), 늘봄학교의 명칭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 지난 2024년도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업시작 2년만에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명칭을 포함한 사업 내용에 혼선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 **내부유보금** (사업별 설명자료, p.68)

○ 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은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며 감액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42억 4,800만원을 이입한 것으로 회계연도말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9〉 내부유보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248	△4,248	-	13,525
내 부 유 보 금	4,248	△4,248	-	13,525

- 지난 2024회계연도의 경우에도 '24년 6월, 제1회 추경안 심사·조정 과정에서 135억 2,500만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이입하였으나, 회계연도말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바, 금년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V .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 관련 법령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을 통해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의 제출여부는 「지방 재정법」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조항을 근거로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여부를 재량 사항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나 제출의 실익이 낮은 경우 등에 한정하는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조정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II. 부대의견 : 없음

IX.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5.12.15)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3362
----------	------

제출연월일 : 2025년 10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정부 감액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연장에 따른 무상교육 경비 등 세입 증감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지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금액(A-B)	비율
총 규모	11,940,119	100	11,799,252	140,867	1.2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885,344	57.7	6,911,704	△26,360 △0.4
	자치단체이전수입	4,610,273	38.6	4,443,903	166,370 3.7
	기타이전수입	18,406	0.2	18,342	64 0.3
	자체수입	124,998	1.0	124,505	493 0.4
	전년도이월금	297,167	2.5	297,167	0 0.0
	금융자산회수	3,931	0.0	3,631	300 8.3
세출	인건비	7,279,438	61.0	7,307,573	△28,135 △0.4
	교육행정기관운영비	40,632	0.3	40,632	0 0.0
	학교운영비	970,233	8.2	970,233	0 0.0
	교육사업비	2,701,427	22.6	2,529,212	172,215 6.8
	시설사업비	886,064	7.4	884,008	2,056 0.2
	재무활동	10,741	0.1	11,126	△385 △3.5
	예비비및기타	51,584	0.4	56,468	△4,884 △8.6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